

# 평창군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0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27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제안이유

- 평창군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.

## 주요골자

- "서기는 자치행정담당이다" 를 "서기는 사회발전담당이다"로 개정 (안 제7조)

##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조례 제 호

##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7조제2항중 "자치행정담당"을 "사회발전담당"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7조(간사,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</p> <p>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, 서기는 <u>자치행정담당</u>이 된다.</p>	<p>제7조(간사, 서기) ①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 <u>사회발전담당</u>이 된다.</p>